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8

발의연월일: 2020. 6. 5.

발 의 자: 안민석 · 서영교 · 박 정

도종환 · 신현영 · 송갑석

박홍근 • 김민기 • 문진석

고용진 • 이동주 • 전혜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 적(斷續的)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 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.

이에 예술인에게도 「고용보험법」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,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제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) 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하여는 「고용보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「고용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용역의 세 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다.
 -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지원 수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조의2(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) 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하여는 「고용보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라 「고용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다.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기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지원 수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